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환경관리 Q&A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 · 문의 · 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sup>1</sup>**

### 간접냉각방식의 냉각수 수처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냉동기의 냉각수가 원료 및 부원료, 첨가제, 제품등에 직접 접촉되지 않을 경우 폐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유사민원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에도 제외되는 대상인지요?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 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냉각수가 원료 및 부원료, 첨가제, 제품 등에 직접 접촉되지 않아 수질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는 물이라면 폐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sup>2</sup>**

### 유해화학물질 인허가 대상 여부?

당사에서는 유해화학물질과 사고대비물질 모두 해당되는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으며, 기존(2015년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로 인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에 등록된 전체 취급량의 50%는 되지 않지만, 상기의 물질 취급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현재 보관장소가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당

사내 상기의 물질을 보관하지 않지만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로 등록된 다른 창고로 이동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래 있던 창고와 이동하려고 하는 창고의 거리는 약 10m정도입니다. 또한 당사의 법적인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기한은 2016년까지 인데,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간이 부족하여 취급하고 있는 물질을 옆창고(상기 품목은 아니지만, 유해화학물질로 허가를 득한장소)로 이동시킨다면,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유해화학물질인허가를 득하여야 옮길 수 있는 것인지요?

**A**

귀하의 질의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시행 규칙 제29조에 따른 영업변경 허가대상은 아니므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6조 및 제10조의 경과조치를 참고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sup>3</sup>**

### 가스 사용시설 보일러 대기배출시설 신고?

난방용 2.5톤 이상인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보일러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올해 12/31한까지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하는데 배출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가 현재설비를 보완하지 않고 기준치 이내로 배출이 된다면 그냥 해당설비에 대한 배출시설 신고만 진행하면 되는건지요? 그러면 방지시설 면제를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아님 향후 법이 강화될때를 대비해서 면제신청은 안되는건지

요 일단 배출시설허용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이 나을시에 다른 방지시설이나 설비보완 없이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A**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언제나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시 언제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에 대한 면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부대설비의 교체·개선 및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0<sup>4</sup>**

####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66조에 의거한 폐지, 고철 관련하여 2000평방미터 이하 규모의 사업장을 영위하고자 하는데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2000평방미터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자(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 운반, 선별, 압축, 감용, 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개정법률에 의거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요? 현행법 하에서 유일하게 폐기물처리신고 간주되는 대상자가 확실한지요? 2000평방미터 이상 사업장과 2000평방미터 이하 사업장과 비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면적만 2000평방미터 이하면 신고의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건도 만족 해야 하는지요?

**A**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관련 규모 미만의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 신고 대상이 아니며, 폐기물처리 신고 간주로 볼 수 없습니다.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 압축, 감용, 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특

별시·광영시는 1,000㎡, 시·군 지역 2,000㎡)인 경우에만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이며,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sup>5</sup>**

####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행정처분?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나목, 1)과 2)에 대한 적용을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차이점) 문의드리며, "규제대상 소음원"이 특정 공사 사전신고 기계, 장비를 포함한 모든 소음원(예로 망치질 소음 및 거푸집 제거소음 등 포함되는지)을 의미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A**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준수여부 확인시 공사장소음이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1)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로 처분을 하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여부확인시 공사장소음이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2)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로 처분을 하면 됩니다.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 금지명령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21〕 행정처분기준에 참고3에 따라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